석사과정 자대생(HY-in) 장학금 내규

제1조(목적)

본 내규는 "중앙 장학금 지급 내규" 제18조의2의 위임에 따라 자대생(HY-in)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수혜대상)

- 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이 있는 자를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한다.
- 1.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특별전형 신입학자
- 2. 입학지원 당시 본교 학부(서울, ERICA캠퍼스) 졸업예정자 또는 직전학기 졸업자
- 3. 입학지원 당시 학부 평점평균이 3.75/4.5이상인 자 (학부 기졸업자는 8개 학기, 졸업예정자는 7개 학기 기준)
- ② 다만, 잔여 장학예산 발생 시 위 ①항 중 학부 평점평균 미달자에 대하여 상위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할수 있다.

제3조(선발)

장학금 수혜대상 해당자에 대하여 대학원팀에서 장학 선발명단을 확정하고, 이를 각 단과대학에 통보한다.

제4조(수혜기간)

- ① 석사학위과정 신입학 학기부터 최초 4개 등록학기까지 최대 4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재학 중 석·박사학 위통합과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.
- ②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이 3.75 미만인 경우,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. 단, P/F 과목만을 수강하여 장학용 평점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최근 정상성적을 준용한다.

제5조(장학금액)

학비감면형 장학금으로써 수업료(입학금 제외)의 70%를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장학생 선발이 학생의 등록금 납부 이후 결정된 경우에는 학기 말까지 해당 장학금을 학생에게 별도 지급한다.

제6조(선발취소)

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해당이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

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, 장학금 지급 규정, 중앙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.

부 칙

- 1. 본 내규는 2015년 후기 신입생부터 시행하며 2015년에 한해 후기 신입학자를 예외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.
- 2. 이 변경내규는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 (변경조항: 제2조 ③항, 제3조 ①항, ②항)
- 3. 이 변경내규는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 (변경조항: 장학금명,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)